

제429회 국회  
(정기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7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1)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7)
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7)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4)
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4)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9)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1)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4)
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4)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7)
1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6)
1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1)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0)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8)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7)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1)
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0)
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0)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9)
3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2)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9)
3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6)
3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9)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5)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9)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항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2)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8)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2)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2)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9)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5)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8)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7)
47.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6)
4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95)
4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4)
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5)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7)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15)
5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8)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0)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8)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1)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0)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1)
6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0)
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1)
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8)
6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7)
6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9)
6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9)
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703)
6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3)
6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7)
7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6)
7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3)
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6)

##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6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1) ..... 1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7) ..... 17
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7) ..... 17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4) ..... 17
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4) ..... 17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 17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9) ..... 17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1) ..... 17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4) ..... 17
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4) ..... 17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27) ..... 17
1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6) ..... 18

1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	18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	18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1) ………………	18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0) ………………	18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	18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78) ………………	18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7) ………………	1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	18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	1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	18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	18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	18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	18
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1) ………………	18
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0) ………………	18
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0) ………………	18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9) ………………	18
3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2) ………………	18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9) …	18
3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6) ……	18
3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9) …	18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5) ………………	18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9) ………………	1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2) ………………	18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8) ………………	18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2) ………………	18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6) ………………	18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2) ………………	18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9) ………………	18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	18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5) ………………	18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8) ………………	18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7) ………………	18
47.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6) ………………	18
4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95) ………………	18

4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4) .....	19
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5) .....	19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7) .....	19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	19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15) .....	19
5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8) .....	19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0) .....	19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8) .....	19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1) .....	19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0) .....	19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1) .....	19
6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	19
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0) .....	19
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1) .....	19
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8) .....	19
6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7) .....	19
6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9) .....	19
6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9) .....	19
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703) .....	19
6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3) .....	19
6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7) .....	19
7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6) .....	19
7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3) .....	19
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6) .....	19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먼저 김승룡 소방청차장이 어제 임명되어 청장직무대행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

석하였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차장 김승룡입니다.

어제 날짜로 임명이 되었고요. 소방청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차장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염중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방청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6건의 청원 중 14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14건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범수 위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15일입니다, 15일. 그리고 난 뒤에 불과 하루 만에 우리 여당 간사께서 저보고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안이 위원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숙려기간을 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법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자고 이 숙려기간을 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지고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그걸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위 상정하

고 내일 법안소위 심사하고 9월 22일 날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뭐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뭐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가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그래서 이 불가피한 사유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의석수가 있으니 의석수만 믿고 위원회 의결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5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 행안위원회 간사로 들어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휴일을 포함해서 5일 만에 상정한, 회부한 지 5일 만에 상정을 해서 후다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

그때가 이재명 살리기였다면 지금은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 모시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를 다 모르겠다……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느냐, 이해를 못 하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진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비록 정부조직법이 우리 행안위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 자체는, 공소청을 만든다든지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금융감독위를 설치한다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위 하나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기재위 그다음에 환노위, 법사위 이런 다른 상임위와 같이 의논을 하자 해서 제가 윤건영 간사께 연설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고 난 뒤에 1시간도 채 되지 않게 단칼에 이것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라고도 민주당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행정안전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오늘 질문하는데 금융감독위가 어떻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떻게 이런 내용 다 받아들일 겁니까? 질문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국회도 국회다운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법부, 통법부 하지만 진짜 통법부를 넘어서 지금 우리 행안위가 통법위로 되고 있다. 그냥 ‘밀어붙여’ 하면 밀어붙여서 되는 법이 있고 좀 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혹시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야말로, 이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행정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제가 이것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연설회의를 제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우려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4차에 걸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개편 때는 발의하고 난 뒤에 5개월, 2차 개편 때는 3개월, 제3차 개편

때는 2년 10개월, 그다음에 제4차 개편 때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10일 걸려서 하자는 겁니다. 토론이고 뭐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결이야, 우리가 집권했어 그래서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간사님.

○서범수 위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내일 소위 할 때만큼이라도 연설회의를 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당연히. 그 생각을 타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묻습니다. 출범 100일 동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 한다면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흐릅니까? 그것은 승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끝난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해서는 안 돼, 이거 해야 돼’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 일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 좀 잘해라’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숙려기간 미경과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15일 경과 후에 상정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동법의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 조기 상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다수당이던 시절인 제19대에 국회 운영위에서 똑같이 처리한 겁니다.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는 되고 왜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리고 연설회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노위도 있을 수 있고 정무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임위를 하나로 모으면 국회 3분의 1이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합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을 모아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하루가 급해서 일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100명 모아서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행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지껏 정부조직법을 개편

할 때 단 한 번도 연설회의를 거쳐 간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는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로 다 처리했던 게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의 조직법만 국민의힘은 연설회의를 주장하십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행안위에서는 법안소위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소위를 할 때 소위 심사 시 관계기관의 차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차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따지면 되지요. 그런데 왜 연설회의를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출범 100일이나 지났다, 이제 제대로 일 좀 하게 해주자. 물론 마음에 안 들고 탐탁지 않은 부분이 야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국민이 볼 때 발목 잡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 좀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 이 정도로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요.

○**이성권 위원** 아니요, 저……

○**박수민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쪽에 한 분 하시고 이쪽에 한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두 분 중에.

○**이성권 위원** 제가……

○**서범수 위원** 계속해야지요.

○**박수민 위원**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2개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좀…… 위원장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토론을 하자면서요, 토론을.

○**박수민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토론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성권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은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고……

○**이성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또 토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민 위원** 일단 이성권 위원 하시고 제가 좀 판단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이성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 건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윤건영 위원** 위원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이성권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 고동진 위원** 이야기를 들으시지요.
- 이성권 위원** 들어 보십시오.
- 윤건영 위원** 본인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 이성권 위원** 들어 보십시오.
- 서범수 위원** 이야기 좀 합시다.
- 고동진 위원** 이야기를 들어요.
- 이성권 위원**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 윤건영 위원** 아니, 왜 다른 위원들의 문제를 제기합니까?
- 이성권 위원** 잘하도록, 제대로 하도록……
- 윤건영 위원**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 이성권 위원**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 윤건영 위원** 당연하지요.
- 이성권 위원** 그래서 선출된 것이고 정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겠단 적 없습니다.
- 윤건영 위원**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거 아니에요?
- 이성권 위원** 보십시오. 결과적인 거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윤건영 위원** 자기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자기 이야기만.
- 서범수 위원** 윤건영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 이성권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이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조직법……
-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 서범수 위원** 가만히 계세요, 좀.
- 이성권 위원** 자, 들어 보십시오.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발의된 지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대통령……
- 이광희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시라니까요. 이성권 위원님, 회의진행발언을 하세요, 의견을 하지 마시고.
- 이성권 위원** 보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회의진행발언을 하는 시간에 왜 자기…… 그 토론은 토론 기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성권 위원** 끝까지 들어 보세요.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조직법이 우리 국회에 넘어온 지 며칠 됐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정부가 제대로 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일, 아니 20일도 아니고 10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자,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지요. 지금 이 정부조직법에 국민들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 문제와 관련된 사법제도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경우는 사개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다 거쳤던 일들입니다. 그리

고 그 이후의 정부들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었을 때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논의하고 논의하고 반대하고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사가 되지 못했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것 말고는 수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속의 과정들,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들은 어디에 가고, 지금 왜 법안 발의하고 난 다음에 15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오류와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어떻게 시정을 할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서범수 간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례에는 없었다, 연석회의가 수용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9월 25일을 디데이로 결정해 놓고 역순으로 D 마이너스 얼마로 해 가지고 상륙작전 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그렇게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조금 따지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의원실, 아마 다른 의원실도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기 송부해드린 질의 순서와 관련하여 내일 질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적으로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하여 5분간 실시하되, 신청하신 위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위원님들 간의 순서를 미리 공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러 질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14시에 본회의가 있어 전체회의는 오전에 종료되어야 하므로 질의 신청을 많이 하셔도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선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안위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선별해 가지고 질의를 받겠다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안 하실 겁니까? 왜 국회가 존재를 합니까?

○윤건영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신상발언 듣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충분히 논의를 하려는 것이지……

○윤건영 위원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발언의 모두에서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다고 전제했고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성권 위원은 본 위원에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를 선택해 준 저희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 이성권 위원** 아니, 지금 하는……
-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 들으세요!
- 이성권 위원**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그렇게 마찬가지로……
-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신상발언이에요.
- 이성권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 윤건영 위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성권 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 채현일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
- 이성권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 윤건영 위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 이성권 위원**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 윤건영 위원** 잘못한 건 인정하셔야지요!
- 위원장 신정훈** 자……
- 윤건영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분명히 이성권 위원은 잘못하셨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니요?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시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범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 채현일 위원** 사과하세요.
- 이광희 위원** 사과하고 가요.
- 이성권 위원** 사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은 제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 윤건영 위원** 느낌이라니요. 느낌이라고 막말해도 됩니까?
- 용혜인 위원** 그것은 분명히 인신공격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신정훈**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 이성권 위원** 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못 합니다.
- 위성곤 위원** 느낌이라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성권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 서범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
- 서범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 이광희 위원**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 이성권 위원** 사과 못 합니다.
- 위성곤 위원**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이성권 위원. 잘 아시면서!
- 이성권 위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데……
- 이광희 위원** 서로 모욕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 위원장 신정훈** 제가 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범수 간사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잠깐 좀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정 또 이 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운영의 관례상 지금까지 서로 양해하고 또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게 서로 상대방 위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서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니 또 이렇게 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앞으로 의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대방 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위원회가 운영해 왔던 것들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건영 간사님께서는 사과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진행하면서 얻은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 1분만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아까 주셨잖아요. 신상발언 주셨잖아요. 1분만.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쪽에 신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달희 위원 신상발언 주셨잖아요. 1분만……

○용혜인 위원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다르지요.

○이달희 위원 1분만 주세요.

○박수민 위원 저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저 길게 안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아까 행정실에서 나간 그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조금 관리를 못 했던 내용인데요. 위원님들의 발언을 일부 제한하거나 거를 의도가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회의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정부조직법이 논의가 돼야 될 자리에 앞서 가지고 갑작스럽게 오후에……

○위원장 신정훈 그렇다고 위원장이 그것을 시켜서나 다른 간사님들이 시켜서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간사님께……

○윤건영 위원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들 계시니까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쪽에 신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정부조

직법 상정을 서두르냐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해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한숨 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조직의 열개를 어떻게 갖추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을 두고 왜 이렇게 빨리 한다, 이 말씀 제가 납득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조직법의 열개가 외부에 나간 지 이미 한참 되었고 그러면 그동안에 야당 의원께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정부조직법 관련된 무슨 공청회인가 토론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오늘 우리가 행안위한다고 하니까 긴급하게 그런 자리를 잡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달희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서범수 위원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사실을 알고 이야기해야지요, 그것은!

○이달희 위원 사실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용혜인 위원 함부로는 누가 함부로 얘기해요!

○이상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야기하는 중……

○용혜인 위원 아까 인신공격이나 사과하세요!

○이상식 위원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7월 20일, 여기 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조직법 4당이 합의해서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 거의 정부 수립 몇 달 만에 이렇게 합의 처리됐는데요. 그때는 합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되고 정권을 문재인 정부가 찾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그 합의에 여러 가지 이면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내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불법과 비정상의 정도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고 해 가지고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에 내용이 있으면 대체토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거 못하겠다, 오늘 잘못됐다,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국정 발목잡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박수민 위원님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논의를 이렇게 끌어가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정부조직법 빨리 바꾸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그거 저희가 도와 드리려고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

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제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세세하게 심도 있게 빨리 논의하자’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셔야지 갑자기 정치적 도발을 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승복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고 발목 잡기라고…… 아니, 논의하자고요. 검찰개혁 누가 반대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국민들한테 피해 입히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건데 얘기를 하자고 그래야지 정치적 도발 비슷하게 발언을 해서 의사진행을 해 버리시면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뭐니까? 여당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야당이잖아요. 저희는 견제해야 되고 문제점을 짚어 드려야 되고. 빨리 하세요. 빨리 문제점을 논의하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발목 잡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를 이렇게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의하자고요. 상정하고 논의하자고요.

○박정현 위원 시작은 그쪽에서 했잖아요.

○이성권 위원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안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요.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남은 시간도 있으니까 주시지요.

○이광희 위원 그만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그만큼만 할게. 그만큼만 할게.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이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이달희 위원 1분 50초 남았잖아요, 시간.

○서범수 위원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딱 1분 50초만큼.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이 이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야기를 하지요. 협조를 하지요.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 하셨고 지금 또 아주 충분히……

○서범수 위원 아니, 간사님이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잠시……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또 하잖아요.

○이광희 위원 신상발언이었으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요. 이야기를 1분 5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그게 아니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 이럴 때 나한테 시간 주면 그냥 가요.

○위성곤 위원 질의과정에서 질의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드렸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제가 지금 이 의사진행을 충분히다 드리고 있잖아요. 간사님이 뛰어들어서 다시 또 시작해 버리면 또 처음부터 될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간사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면서.

○서범수 위원 다시 하지요, 그러면. 1분 50초만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범수 위원 아니 아니,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주십시오.
- 위성곤 위원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범수 위원 아니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지요.
- 이성권 위원 남은 시간만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 서범수 위원 언제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주셨잖아요.
- 이달희 위원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 용혜인 위원 간사님, 아까 발언도 한 번 하셨잖아요.
- 서범수 위원 딱 1분만 할게요, 그러면.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또 시작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시잖아요.
- 서범수 위원 반복 안 해요.
- 위원장 신정훈 지금 윤건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 서범수 위원 그 말 내가 반복 안 할게요. 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반복 안 할게요, 그러면 내용을 반복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정훈 아니, 앞으로 계속 하실까요?
-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 이러실 때 잠깐 주시면……
- 서범수 위원 잠깐 주면 되지요.
-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한 반복됩니다, 의사진행발언.
- 용혜인 위원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제가 충분히 드리고 또 드리고 제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조해 주셔야지. 간사님이 계속 그러시면, 계속 한번 해 보실까요?
- 서범수 위원 한번 해 봅시다, 그래.
- 위원장 신정훈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조정하려고……
- 서범수 위원 해 보시지요. 해 보자고요. 아니, 야당 간사한테 그 정도는 한번 기회는 주어야지요.
- 위원장 신정훈 사과를 요구하는 윤건영 간사님의 이야기도 제가 적절히 관리하면서 또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협조해 주셔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됩니까?
- 서범수 위원 아니, 협조가 됩니까, 지금? 이거 의사일정도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의사일정을 합니까, 지금?
- 위성곤 위원 상정하시지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 위원장 신정훈 상정해 가지고 대체토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서범수 위원 아니, 아까 윤건영 간사님 관행, 관행하는데 우리가 22대 국회 와 가지고 언제부터 국회 운영에 대한 관행을 지켜왔습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발언권도 안 얻고……

○서범수 위원 왜 여기에서는 지켜야 되느냐고! 관행을 깐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이광희 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왜 관행 이야기를 해, 여기에서!

○이광희 위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간사가 지금 회의 계속 늘리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사를 방해……

○서범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주려고 그래! 가만 계세요!

○이광희 위원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뭔 자기들 얘기만……

○고동진 위원 아니, 이 위원은 왜 이렇게 매너가!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이달희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광희 위원 그러면 손가락질 안 하고 발가락질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중지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충분히 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대체토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의사일정 제18항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1)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7)
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7)
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4)
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4)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9)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1)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4)
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4)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7)

1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6)
1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1)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0)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78)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7)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1)
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0)
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0)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9)
3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2)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9)
3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6)
3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9)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5)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9)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2)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8)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2)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2)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9)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5)
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8)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7)
47.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6)
4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5)

4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4)
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5)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7)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15)
5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8)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0)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8)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1)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0)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1)
6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0)
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1)
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8)
6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7)
6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9)
6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9)
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03)
6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3)
6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7)
7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6)
7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3)
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6)

(11시10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7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장관님한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념으로 대국민 이야기하면서 원전 짓는 데 최소 15년 걸리고 재생에너지 1~2년이면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실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건설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6년이었어요.

오늘 자 중앙일보에 서울대 객원교수인 원전 경력을 35년 가지고 계신 이종호 박사가 한 얘기가 신고리 1·2호기도 5~6년에 완공을 했다, 그런데 단지 최근에 신한울 1·2호기가 10년, 12년 걸렸는데 문제인 정부 때 운영 허가, 경주 지진 그런 것도 일부 있었지만 부지 신청을 하고 나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7~9년 걸려서 아마 그런 데이터가 밑에서 보고가 올라간 것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그걸 포함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고동진 위원** 부지만 빨리 선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계획을 확정 지은 이후에 완공해서 가동할 때까지의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지요.

○**고동진 위원** 자, 공사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고동진 위원**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6년이었어요, 건설 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특히 SMR 같은 경우는 3~4년 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SMR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질 않습니다.

○**고동진 위원** 내가 이것 질문을 하는데…… 답변 기회를 드릴 때 답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볼 때 재생에너지 추진하는 느낌 자체가 사이비 종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대국민 사기이자 거짓말 선동으로 보이는 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0일에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이 에너지 비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킨다, 이게 세기의 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는 신재생에너지의 건설 비용, 에너지 단가가 최근에는 원전 비용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이고, 지금 원전이 한 50원이 안 되고 아직도 태양에너지 120원이 넘

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에너지사무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즉 원전을 죽이고 재생에너지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이걸 환경부에 넘긴 전 세계적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정책하고 환경정책을 뮤어 가지고 관리하는 나라는 영국·호주·이태리, 딱 3개국입니다. 이것 환경부 통해서 확인한 거고. 독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비용 급등, 제조업 경쟁력 붕괴라고 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되돌렸는데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행안부에서 스터디한 적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혹시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조직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동안 기후·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넘게 해 온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가 되어 온 일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국회에서 논의한 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사무를 환경부로 넘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도 탈원전을 전제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묻지마 확대하겠다…… 이게 곁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실상은 대규모의 안정적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을 포기하고 대국민 에너지 비용을 대폭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에너지사무는 산업부에 존치하는 게 백번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질 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원전 등 에너지 분야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논의의 초점에서, 국정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외면되지 않을까 그것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사례로 한 서너 개 국가를 찾으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14개 국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동진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자료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정부 관계자님들, 지금 정부조직 개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야당 의원님실에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절차적인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장관 산하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중수청이 온다고 해도 여기에 관여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꼭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할 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재성 대행님,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령 준법수사감시관 제도랄지, 명칭은 여하간에 그런 내용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걸 경찰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도 내부의 그런 수사 통제라든지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가 좀 봤는데 한두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그렇다 보면 지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융감독정책만 하는 거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정책은 재정경……

○**이상식 위원**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가고 금융감독 기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감독 기능을 관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사무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에 정책 업무는 완전히 다 이관되고 금융감독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으로 하는 게 작은 정부의 원칙에 조금 배치되지 않느냐. 가령 공소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같은 이런 큰 기관의 장들도 차관급으로 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제 생각에는요 금융감독처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차관으로 보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처나 청으로 두지는 않게 될 것이고요. 직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장관급

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관급 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저출산·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부개편안을 쭉 보니까 저출산이 기후위기와 함께 저희들이 당면한 두 가지의 가장 큰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본다면 저출산 또는 인구에 대한 정부조직의 개편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은 안 되겠지만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 보건복지인구부랄지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인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부처에 관여가 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의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하고 나서 후속조치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령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 지 벌써 1~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 저번 행안위 등에서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당연히 인력이나 장비·예산·정보 같은 게 다 넘어와야 되는데……

대행님, 지금 국정원에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나 이런 것 넘어온 게 없지요, 별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전임 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이번에 여러 가지 부처의 업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법령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동되고 그렇게 후속조치가 깔끔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인력 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여당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당을 편하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처 통폐합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책위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들을 부처별로 다 모셔서 토론회, 간담회를 이어 가던 중입니다. 저희들은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이라서 모든 토론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중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토론회는 벌써 보름 전에 먼저 계획된 건데 급하게라니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상대 당을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강아지가 목줄에 끌려 가지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발목 잡기라니요. 자연하기 위해서라니요. 국민의 힘은 대선 때도 41%나 받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를 옮기면 환경에 중심을 두실 겁니까, 에너지에 중심을 두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둘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그런데 뒤에 환경부로 이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뭡니까, 우리 산업 중에서? AI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AI.

○**이달희 위원** AI 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데이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거기에 가장 많이 드는 게 전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전기에서 원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전이, 아까 장관님 말씀으로는 원전에 우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원전에 관련된 생태계를 전원 다 가져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전이 지금 3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R&D는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SMR 통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산업, 수출, 통상 이런 거는 산자부에 그대로 남겨 놓는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운영 체계만 가지고 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가 3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해서만……

○**이달희 위원** 이렇게 3개로 갈라지는데 잘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생태계를 다 부숴 놔서 그 생태계 살려 가는 데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이관됐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정부 때에는 오히려 SMR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의 삭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부 여당이 숫자도 많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 개편해야지요, 국정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에 관련돼서는 규제를 하는,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판단력이, 그런 오염된 판단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감독청이라든가 전력감독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기후에너지부가 아닙니다. 기후 에너지가 훨씬 더 앞에 주된 정책 수행 항목으로 나와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규제부서랑 산업진흥부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요네즈

만들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분리돼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전 생태계를, 제가 경상북도에 있다가 와서 그런데 원전 생태계를 더 진흥시켜야 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부의, 진보 정권의 이권 카르텔이 중국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집하시는 이유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고집이라고 말씀하시는게 고집이 아니고요.

○이달희 위원 전 세계가 원전을 확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마저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있어서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3개 부처가 국내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히 협력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이 신규 원전 건설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에 현재까지 해왔던 산업부와 통상자원부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님, 부처를 운영해 보면 과 단위도 부처 간막이가 그렇게 큰데 부처 간에 이렇게 넓은데 국내 원전의 생태계를 어떻게 해외로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저는 소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허석곤 전 청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열리는 첫 번째 행안위 전체회의입니다. 소방청장과 차장 둘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동시에 직위 해제가 된 초유의 상황에서 앞으로 소방이 국민을 위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 차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력에 의해서 소방이 좌지우지되고 또 소방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독립성도 제고를 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소방의 내란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차장님도 여기 동의하시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용혜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소방청장에 대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청문회 실시 여부와 임기 보장 2년안이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임기 2년 전에 대한 것들은 소방청

장의 업무 수행의 안정성,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문회 건 같은 것은 조직 특성상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혜인 위원** 소방청이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경찰처럼, 사실 소방이 사법권한은 없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란 과정에서 봤던 위험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같은 비상조치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안 되는, 몇 장 안 되는 계엄지시서에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전 장관과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2·3 내란을 겪은 국민 모두가 소방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소방에서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임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에 가담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소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이 어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법으로 명문화할 때 그게 소방 현장 전체의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소방 현장의 공무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노조에서도 찾아오시고 아마 여기 있는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도 다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방청장은 당시에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입장장을 밝히지도 못했어요. 왜냐, 정책 추진에 있어서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정치적 사안이라거나 혹은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사안이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을 위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없고 현장에서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청장이 제대로 이야기 한 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임기 보장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인사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년 동안 2년의 임기를 다 채운 소방청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2년 임기 다 채운 소방청장은 없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1명 있었습니다. 딱 1명 있었어요.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소방의 재난 대응능력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 가는데 안정적으로 소방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소방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기 어려운 구조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의 임기 보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청문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정권에 눈치 보지 않고 소방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이라면 저는 이 임기 보장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견제를 받아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의 안정성과 또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력이고 또 국민적으로 검증된 인재들이 소방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에 소방청이 망설이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난 3년 동안 퇴임한 소방청장들 면면을 보면 여러 인사 청탁이랑 입찰 비리로 입건된 사람, 재판받은 사람도 있고 이태원 참사 통제단 가동하는 중에 음주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란으로 피의자 입건돼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소방청장이 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소방청에서도 임기 보장과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위원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안전에 있고요. 아까 권력의 눈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은 현장에서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게 큰 과제인데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 보장 관련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현장의 대응력 강화는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정부가 계획한 국정을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채현일 위원** 지난 12·3 불법계엄, 내란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외 여러 가지, 관세 협상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해결치 못한 그런 난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중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조직법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부조직법은 국정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국정 계획을 집행해 나갈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획이 완료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계획 실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AI, 4차산업 등에서 사회·경제·기술·환경 급변했는데 정부조직은 과거 30~40년 행정체로 해 가지고 비효율성 그런 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그래서 에너지환경부가 생기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각론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지금 보면 기재부, 검찰청 등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을 분산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시키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이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중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하고요.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검찰 제도 개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관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될 게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출범할 때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 중수청에도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도 많이 이전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 간의 수사 범위, 권한 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법률적으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사 영역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해소 방안도 마련을 하되 오히려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의 비대화라고 해야 되나,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확대해야 된다 등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현재의 경찰청과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이 돼서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외청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게 된다면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 집중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성평등가족부 신설한다면서요, 개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의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헌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헌법에는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지요.

○**서범수 위원** 양성평등으로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법수 위원 성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리고 헌법상에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개념하고 조금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반적……

○서법수 위원 여러 가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양극으로 좀 나뉘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합의를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부처의 명칭이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오면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사회적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합의가 완전히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신을 기반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서법수 위원 양성평등은 돼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런 것에서도, 그런 법 조항에서도 성평등을 늘 쓰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불쑥 들이댔다가 또 사회적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합의를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양성평등의 표현 역시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각각 주장이 있어서 이게 또 부딪힌단 말이지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나뉘져서 갈등을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더해서 사회적갈등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더욱 격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서법수 위원 그다음.

장관님, 중수처장은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은 중수청법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요.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서법수 위원 아니,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중수처법은……

○서법수 위원 초안에 보면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의원님들이 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서법수 위원 그리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 입법으로 중수청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논의가 돼 나가야 하고요.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그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논의할 그……

○서법수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온 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추진단이 아직 구성이 안 돼서요. 추진단이 구성돼서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그러면 초안 자체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초안이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초안이 아직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초안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만약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법수 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장관님 아닙니까? 이 중수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온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총리실, 총리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서법수 위원 어찌 됐든 장관님, 자꾸 책임 회피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님 외청으로 오잖아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그 중수청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의사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제 의견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서법수 위원 그런데 제시를 하려면……

중수청장은 어떻게 임명이 돼야 됩니까, 장관님 생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법수 위원 지금 법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자꾸 되돌이표로 갑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수청장은 어떻게 임명이 돼야 됩니까?

시간 다 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법수 위원 왜 그리 조심스럽습니까? 기다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다른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법수 위원 장관님이 그러면 외청을 어떻게 설계를 할런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도 지금 회피하시거든요.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결정된 게 그래…… 장관님 생각을 좀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이르다고요, 아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언제쯤 말씀하실 건데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추진단에 우리 부의 입장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님,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검사는 어떠한 죄를 알고 있어도 봐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을 떼서 중수청을 만들었고 중수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수처를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행안부에 갔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집중된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무부로 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무부로 중수청이 갔을 경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수사도 법무부 소속 중수청, 기소도 법무부 소속 기소청,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법무부로 갈 수도 없다. 행안부로 가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행안부로 간다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고.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떨지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에 있을 때 두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일반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일반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2개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일반적 업무의 감독 권한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절차 중에 고위직에 대한 제청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인사와 일반적 지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안부장관님은 잘 하시겠지요.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과거 경력에 의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어떤 역대 죄악의 장관이 나와 가지고 인사와 감독권을 무리하게 사적 남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간다는 전제하에 행안부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을 가장 합리적으로, 장관이 자의적으로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인사와 감독권을 통해서 두 수사기관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인사와 감독권의 합리적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단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수청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견해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에 대해서 물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 통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 그리고 기소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사법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통제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인사와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와 일반적인 업무 감독권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이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가 남습니다.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법적 통제 문제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사가 영장의 지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나 강제수사나 일반적 임의수사의 통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사가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든 통신이든 구속영장이든 전부 검사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의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여러 가지 있어요. 참고인 오라고 해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임의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입건 단계에서부터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지금 강제수사뿐만이 아니라 임의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님께서 두 수사기관을 일반적 지휘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TF팀에 많은 생각을 전달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른 회의와 달리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서범수 위원 추가로 해 주셔야지요. 추가를 하셔야지요, 그거는 아까 기회를 많이 주신다면서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5분으로 제한된 시간을 1분 더 달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 그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추가질문시간 안 주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장관님, 이번에 검찰개혁 추진하는 기본 이유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권력이 막강해서 견제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그 핵심이 검찰이 1차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검사가 수사관처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가 된 거예요. 맞지요? 직접수사를 하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특히 특수부가 문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래서 1차 수사권이라는 게 견제되지 않고 기소가 바로 되면 그게 문

제가 돼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취지에 공감하는데 수사·기소를 분리한 저희가 실전에 2년간의 검수완박 이후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 인지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 역시 통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장관님이 통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미 시중에 나가시면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 지연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응답 이런 것들은 대부분 1차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의 총 수사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2차 수사기관……

○**박수민 위원** 아니, 통계와 시중에 모든 변호사, 경찰, 검찰이……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 직접 법무부 만나서 다 얘기한 거예요. 왜 수사가 지연이 되느냐 양쪽이 분리돼서 핑퐁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간에 핑퐁하는 것, 구청, 교육청, 시청. 이것 빈번한 일입니다, 수평적으로 세워 놓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1차 수사, 2차 수사로 나누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고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직접수사권도 없애자고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된 기관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핑퐁을 어떻게 안 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게 수사절차 설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중수청을 탄생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까도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박수민 위원** 아니, 그 협력관계를 했는데 2년 동안 수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민생범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를 지금 전국의 전문가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치실 거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지난 2년간, 정확히 말하면 5년이지요. 5년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소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절차는 일단 송치 이후에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늦은 협력관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기에 협력관계 설정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견해가 아니라 장치를 하셔야지요. 검수완박 하시자니까요? 수사·기소 분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박수민 위원** 그 분리된 기관들이 어떻게 일할 거냐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번에 중수청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리고 공소청을 만드시고. 그러면 분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동의된 문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피해와 사법체계의 문제가 이미 지난 2년, 5년간 불거졌는데 그 문제를 같이 들고 오셔야지 그거는 연구하겠다,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얘기 하시면 그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국무위원 아니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제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서 지금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박수민 위원**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지요. 이미 법무부장관하고 중수청을 가져올 때 많이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있든지 상호간에 업무체계를 짜 줘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경제가 되고 검증이 되고 촉진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양립을 시켜 놓으면 그거를 누가 조율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은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간에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서 그것이 또 가져오는 불합리가 컸습니다, 과거에.

○**박수민 위원** 장관님,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내 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 다 겪고 있습니다. 구청, 교육청, 경찰청 간에 지역구 가면 업무 협조 안 돼요. 많은 민원이 늘어납니다. 이 양립된, 수사·기소 분리된 것 동의하는데 그다음에 조율을 어떻게 할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장관님,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양성평등, 성평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양성평등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요.

장관님, 헌법에 양성평등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조문을 바로 읽어 드리……

○**정춘생 위원** 양성평등 조항은 없습니다. 11조에 보시면, 다 아시는 11조 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저는 양성을 강조한다기보다 존엄과 평등을 강조한 조항으로 읽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족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정춘생 위원** 예. 그래서 외국에서도 다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고 하는 거

를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으로 안 하고 양성평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소수자 이런 분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그런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은 저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이 돼서 관련 업무들을 거의 못 해 왔습니다, 위축이 되고. 그리고 관련 정책도 진전된 것 없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확대 개편 아닙니까, 원복이 아니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그러면 명실상부한 그런 정책과 입법, 법안들이 이관이 되고 조직도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련된 거는 아직 부족하다. 뭐냐 하면 성평등의 집합체는 일자리, 고용 불평등, 성별 임금 격차, 모든 차별의 집합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위해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성평등가족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들을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여성 고용 정책뿐만이 아니라 공시제도 포함해서 OECD 중에 가장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요. 법이 필요하다면 같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법 이관이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부처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최초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여성인권이 굉장히 신장이 됐고, 물론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생기면서 흡수·통합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관련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다 조직이 되면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세계에서도 평가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여성가족부를 만듭니다, 확대 개편. 그래서 기존에는 본래도 예 없었던 가족 정책이 공식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법 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그 부서의 명칭이 정책 추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단체에서도 그렇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가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정 대상을 명칭으로 한 부처가 없다 이런 이유인데 저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소외돼 온 청소년 정책을 본래도에 올리고 청소년의 진흥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도우려면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부처 명칭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이유는 잘 알겠고요. ‘청소년’ 표현이 부처 명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정부조직법이 제출이 됐습니다. 명칭이 부처 명칭에 반영돼 있지 않아도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구성에서부터 잘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윤호중 장관께 질의할게요. 잘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호영 위원** 저는 정부조직법을 여당 하면서 두 번 직접 관여를 해 봤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수여당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6개월 이상 정부 조직 개편을 반대하고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던져 놓아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의 동의가 어려워서 아예 개편을 하지 않은 채로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

조직을 바꾸면 적응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경 폐지 때문에, 해경의 정보·수사 기능만 일반 육지 경찰로 옮기는데 끝내 제대로 못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정부조직을 너무 쉽게 탁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데,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아직 발의 안 됐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국가사무를 하면서 기관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법을 만들면서 후속 기관 법도 안 만들어진 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1년 뒤에 시행하기로 유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지요. 그랬다가 만약에 뒤에 만들겠다고 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법 또 개정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일은……

○**주호영 위원** 다 준비해서 개정해야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부조직법 바꾸면 법 모두 몇 개 바뀌어야 돼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상당히 많은 조항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호영 위원** 상당히가 몇 개예요? 그것 정비 다 됐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다 조사해 놨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것 몇 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개수는 지금 바로…… 7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주호영 위원** 만약에 야당과 협의 없이 이 법 만들었다가 야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걸면 이거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리지요? 2년 걸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칙 개정 방법이 있기 때문예요.

○**주호영 위원** 지금 여당이 숫자가 다수라고 야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야당에서 지금 대응책으로 그걸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협의하셔야 됩니다.

충무지장이라고 아무리 힘 없는 어린애도 남의 눈을 찌를 작대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답(答), 한자의 답(答) 보십시오. 각자의 작대기를 다 모아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돼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 정부조직에. 저는 첫째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환경을 합쳐 놓으면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니 빅데이터니 하면서 전기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에너지와 환경을 붙여 놓으면 환경이 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 복잡한 수사 구조를 바꾸면, 지금 우리 국회든 정부든 이걸 정교하게 바꿀 준비가 저는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요. 논의조차도 안 돼 있잖아요. 완결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윗대가리만 바꾸어 놓고 밑에는 1년 안에 하겠다? 이건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의 도리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 시간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고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평크가 나든지 충돌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고 모든 걸 협의하셔야 돼요. 칠백몇 개의 법안도 넘는다고 저는 봐요. 모든 법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해야 될 일들 다 찾으면 수백 개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야당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야당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협의를 잘해서 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위원** 그리고 수사 구조는 이거 잘못 손대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도 못한 채 훌트려 놓으면……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히려 더 시스템을 명료하게 잘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많이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영남권에 대규모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또 강릉에 가뭄으로 강릉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군산 등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

던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때문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탄소중립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탄소중립 관련되어진 정책들을 해 왔는데, 그동안 환경부가 그 업무를 해 왔었는데 그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이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와 산업이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3개 국가가 분리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OECD 38개국 중에 27개국, 미국·영국을 포함해서 27개국이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과 에너지가 통합된 나라는 한 11개 국가 정도 되고 또 기후·에너지·환경이 통합된 나라는 11개, 호주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등이 돼 있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고리원전과 관련되어서 6년 걸렸다고 앞서 위원님께 말씀하시던데 실제 확인했더니 67년에 계획이 확정되고 78년에 상업운전이 돼서 12년 이상이 걸리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은 원전은 실제 설계하고 계획하면 10년 이상 걸리고 재생에너지 결정하면 일이 년 내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지금 AI 시대에서 데이터센터라든가 GPT 등 LLM, 거대 언어모델들이 많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탄소중립은 시대적 흐름, 앞서 얘기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 산업경쟁력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RE100을 실현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산업경쟁력이 매우 낙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되어진 부처를 신설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가,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은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요. 원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정부 보조금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개인과 기업들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물론 원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강력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 자원 부분과 그리고 원전 수출 부분을 산업부에 남겨 놓은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에너지에 있어서 자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가스인 경우는…… 사실은 석탄 화력을 줄여야 되고 줄이려면 자원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에너지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듯이 원전이 만들어지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자원을 산업부에 남겨 둔 것, 그러니

까 에너지 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다 해외에 에너지 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남겨 두는 것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어느 정부든지 간에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 초기에,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 항상 그렇게 해 왔었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 속도감, 이 급발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이게 발의된 게 15일, 그제지요. 그렇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지요. 10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내일 법안1소위에서 논의해서 그다음에 22일인가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오늘 아까 의사 보고가 올라온 72건의 안입니다. 이 중에서 내일 법안 심사하고 소위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바로 결정 내려고 하는 법안이 이 법안이겠지요. 정부조직법이겠지요. 제가 행안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속도감 있는 법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는 그래도 공청회라는 절차라도 거쳤어요.

정부조직법을 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다양화·다원화돼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회라는 공간 속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성권 위원님, 저희가 17대 때 같이 활동을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임기 말에 행안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이 치러지고 2008년 2월 25일 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럴지만……

○이성권 위원 답변, 제가 말하는 취지가 충분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성권 위원 짧은 기간이라도 이런 속도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야당이 협조해서, 왜냐하면 그때 다수당이었으니까요, 열린우리당이.

○이성권 위원 제가 저도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안은 그래도 여야 간에 충분한, 그때는 지금과 같이 탄핵을 거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출범을 하고 인수위 거쳤고 인수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직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성권 위원 그걸 이해를 하고 제가 전제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9월 25일이냐

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가 마련해야지요. 책상에서 안을 만드는 사람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바깥에 나왔을 때 국민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을 하자는 게 저희들 주장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뿐만 아니고 앉아 계시는 부처의 공무원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설계 한번 잘못해 가지고 시공이 되고 나중에 보면, 저는 건축물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허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가지고 백번 얘기해도 아마 틀림없이 저희들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거쳐 가는, 밟고 지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 야당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세부 질문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이시니까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는 치안이나 행정, 지방자치를 다루는 광범위한 영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전부 수사와 관련된 게 총집결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려스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소와 그리고 수사를 해 왔던 검찰청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수사의 독점이 또 행안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과연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느냐 우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평통도, 수사기관 간의 평통 문제도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마련한다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조직 개편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보충질의……

○박수민 위원 저도 1분만 주시지요.

○윤건영 위원 간사님, 이게 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인데 계속 같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서범수 위원 아니요, 같은 이야기…… 할 이야기가 많아요.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럼 법안소위에서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 내가 법안소위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오시잖아요. 그만하시고……

○박수민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윤건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시든가 계속 이렇게……

○박수민 위원 저 시간 다 지켰어요.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범수 위원 아까 토론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준다면서요.

○위원장 신정훈 예, 됐습니다. 됐어요.

○윤건영 위원 아니, 많이 주는 거하고 반복된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서범수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지요.

○위성곤 위원 1분씩 주세요, 1분씩.

○윤건영 위원 1분씩만 하시지요, 그러면.

○박수민 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서범수 위원님 2분 하십시오, 2분 하시고.

○서범수 위원 윤건영 위원님, 제가 반복 질문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복 질문 안 할게요.

행안부장관님,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 되어 있지요, 헌법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총장은 없어져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없어집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헌법에 명기된 검찰총장이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없어지거나 아니면 개명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거 헌법 위배 사항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헌법의 위배 사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견해가……

○서범수 위원 그게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런데 공소청장, 공소청을 만들든지 검찰청 안 하면 검찰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부조직법상의 공소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소기관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장을 만들잖아요, 정부조직법이나 또 공소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헌법 내용이 개명돼 버리잖아요,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관의장……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중수청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초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그 사이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있으면 바로 제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간 유예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년이 다 걸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년 안에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려면 1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줘서 1년 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1년간 공백은 누가 커버합니까? 검찰은 없어진다고, 검찰청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서 손 놓을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 어디서 해요, 1년간 공백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현재……

○**서범수 위원** 그거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어요? 그 피해를 누가 커버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법무부와 잘 협의해 가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이, 장관님이 검찰청에 있는 검사라면 그거 하겠어요? 없어지는 조직에 내가 왜 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히려 일부의 주장은 수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범수 위원**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나이브하게. 이게 하루하루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내 몰라,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갈 거야 이거잖아요.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데.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의 기소와 공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청입니다.

○**서범수 위원**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하는데 대신에 국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신정훈** 자, 이제 이 정도로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행안부장관님,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명칭이 정부조직법 2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하려면 금융위 설치법 별도로 개정 필요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필요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 떼어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법만 통과되면 어떻게, 재경부는 어떤 모양으로 탄생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은 정부조직법상으로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재경부는 이번에 안 탄생하는 겁니까? 기재부로 당분간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처 또 만드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것이 내년 1월 2일부터라는 말씀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당분간 1년 동안은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올해 말까지는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금융감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도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체계를 4개로 쪼개 가지고 지금 금융 전문가들이 대혼란에 빠진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리 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하면 재정경제부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박수민 위원** 부칙에 의해서 안 탄생합니까? 언제 탄생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월 2일부터입니다.

○**박수민 위원** 1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1월 2일 사이에 이거 정리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금융감독체계 4개로 쪼개는 것에 대해 이게 통과될지 말지 그걸 전제로 그럼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법을 보니까 급히 추진해서 그런지 지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기획예산처로 바뀐다고 정부조직법에 돼 있는데 금융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탄생을 못 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부칙 조항으로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올해 안에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소위에서 별도로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국회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종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연희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청가 위원(1인)

이해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차관보직무대리 조영진

조직국장 이창규

예방정책국장 황기연

의정관 김한수

정책기획관 임철언

민방위심의관 장한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우

기획조정관 도준수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경비국장 임정주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백동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오승훈  
기획재정담당관 이진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도희락

임시회의록